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225

발의연월일: 2025. 1. 3.

발 의 자:이정헌・황정아・노종면

박민규 • 최민희 • 김우영

정동영 · 한민수 · 조인철

김 혂 • 이후기 • 이해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 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9명은 교육부장관 추천 1인과 교육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하고 있고, 사장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운영과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 대하며,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 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 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 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9조, 제13조, 제14조제1항제5호의2·제5호의3 및 제1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교육발전,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를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를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 원회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되,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9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性別)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성별(性別)로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성별(性別)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모·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에 규정된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

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 ⑨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 여야 한다.
- 제14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 5의3.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이하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사장ㆍ이사"를 "이사"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 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 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 교육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공공성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임원) ① (생 략)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 ② -----제13조에 따른 이사 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 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를 받아 임명한다. ③ -----이사회의 제청으로 ③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④ -----임명하되,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13명---구성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 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 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u>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u> 위원회가 임명한다.

-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性別)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성별(性別)로 각각 1명 이상이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 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성별(性別)로 각 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 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신 설>

<u>④</u>·<u>⑤</u> (생 략)

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 정을 거쳐야 한다.

<u>⑤</u>·<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7) -----

지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에 규정된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 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 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 ⑨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

⑦ ~ ⑨ (생 략)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 5. (생 략) <신 설>

<u><신</u>설>

6. ~ 12. (생략) ② (생략) <신 설>

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① ~ ② (현행 제7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5의3.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 보추천국민위원회 구성과 운 영

- 6. ~ 1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 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 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 한 국민위원회(이하 "사장후보 추천국민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 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 하여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

- <u>야 하며,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u> <u>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u>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 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 천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